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 
제228회 임시회 (2019. 3. 6. 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조희옥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출경위
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- 제출일자 : 2019년 2월 22일 (금)
- 회부일자 : 2019년 2월 25일 (월)

## 2. 제출이유

마포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기본원칙, 적용범위,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 ~ 제5조)
- 다.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사전협의(안 제6조 ~ 제7조)
- 라. 위원회의 설치내용 및 구성(안 제8조~ 제9조)
- 마. 위원의 해촉 및 제척·기피·회피(안 제10조~ 제11조)
- 바.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(안 제12조~ 제13조)
- 사.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, 통합·폐지 (안 제14조~ 제15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입법예고 : 2019. 1. 24. ~ 2019. 2. 13. (의견제출 없음)
- 다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- 라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 없음
- 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9. 2. 19.)

#### 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마포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함으로써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2019년 1월말 현재 우리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·협의·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총 110 개이며, 설치 근거별로는 법령 59개, 조례 44개, 규칙 5개, 기타 2개 임.

〈표〉 위원회 현황

(2019.1.31 현재)

위원회수(설치 근거별)						평균 회의개최 횟수	미개최 위원회 수
계	법령	조례	규칙	기타 규정	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(지침)		
110	59	44	5	1	1	2.8	31

- 그 동안 위원회는 복잡다양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에 맞춰 정책결정 및 집행·평가과정에 참여하여 구정의 전문성, 민주성, 공정성 등을 제고하여 왔으나,

- 위원회 설치 시 구민 각계 각 층을 대표 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미흡하고,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장기간 연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,
- 또한,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며,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가 존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
-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,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·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조례안을 살펴보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적정수준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설치목적 및 기능, 위원의 구성 및 임기, 운영방법, 존속기한, 유사중복위원회의 설치제한 및 통합·폐지규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,
- 안 제7조에서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사전검토 요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안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언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.
- 또한, 위원회는 법률, 조례 등 개별 근거기준에 따라 구성하고 있으며 회의개최 실적(최근3년간 개최사유 미발생 위원회 존재), 예산집행 내역 등 위원회별 특성이 다른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으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# 참 고 자 료

## 1.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

연번	자치구	제정현황
1	본 청	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2011.9)
2	종로구	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(2009.10)
3	중 구	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2012.7)
4	용산구	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2017.7)
5	도봉구	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2016.5)
6	관악구	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2013.12)

## 2. 마포구 위원회 구성 현황 (2018.12월 현재)

연번	위원회명	담당부서	목적	구성	지급액 (1인)	개최횟수		
						'16	'17	'18
1	인터넷방송운영자문위원회	공보담당관	인터넷방송 운영 자문	7명(당연직1)	7~10만원	7	2	2
2	상징물 관리위원회	공보담당관	상징물 제정·개정 심의	8명(당연직1)	10만원	-	-	1
3	공직자윤리위원회	감사담당관	공직자윤리사항 심의의결	5명(당연직1)	7만원	2	2	2
4	민원조정위원회	감사담당관	마해결, 반복민원 심의조정	11명(당연직3)	7~10만원	-	-	1
5	인사위원회	총무과	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사전 심의의결	19명(당연직8)	7~10만원	29	43	44
6	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	총무과	재해유발요인 사전분석	21명(당연직1)	7~10만원	-	-	-
7	안전관리위원회	총무과	안전관리 정책심의조정	18명(당연직17)	7만원	4	1	2
8	안전관리실무위원회	총무과	안전관리 의안 사전검토	15명(당연직15)	7만원	10	4	5
9	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	총무과	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	9명(당연직6)	7~10만원	2	3	2
10	남북교류협력위원회	총무과	남북교류협력기금 심의	11명(당연직3)	7만원	2	3	5
11	주민투표청구심의회	자치행정과	주민의 직접참여 보장	11명(당연직1)	7만원	-	-	-
12	구민상 심사위원회	자치행정과	마포구 구민상 후보자 심의	9명(당연직2)	10만원	2	1	1
13	명예구민증수여 심사위원회	자치행정과	수여대상자 적격성 심사	7명(당연직3)	7~10만원	-	-	-

14	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	자치행정과	마을만들기 정책 심의자문	15명(당연직6)	20만원	2	1	1
15	기부심사위원회	자치행정과	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	11명(당연직5)	7~10만원	-	1	2
16	지명위원회	자치행정과	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사항 심의	6명(당연직2)	7~10만원	-	-	-
17	공유촉진위원회	자치행정과	공유촉진정책 심의 및 자문	10명(당연직2)	7~10만원	2	1	1
18	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	관광과	관광산업 발전 및 사업추진 활성화 검토	16명(당연직4)	10만원	1	-	-
19	기록물평가위원회	민원여권과	기록물 관리사항 평가심의	5명(당연직3)	10만원	1	2	-
20	정보공개심의회	민원여권과	이의신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심의	7명(당연직3)	10만원	2	4	3
21	정보화전략위원회	전산정보과	정보화 정책 심의조정	11명(당연직2)		1	2	-
22	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	청소행정과	재활용품 수집선별처리 자금 확보지원	6명(당연직4)	7~10만원	4	3	4
23	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운용 심의위원회	청소행정과	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재원으로 우리구 주민복지증진 도모	18명(당연직6)	7~10만원	4	2	3
24	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기금심의위원회	청소행정과	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지원	6명(당연직4)	7~10만원	6	3	3
25	생활폐기물수집·운반·대행업체 평가위원회	청소행정과	대행업체 평가결과 심의의결	9명(당연직4)	7~10만원	1	1	1
26	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	청소행정과	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	12명(당연직4)	7만원	1	1	1
27	마포미래성장자문단	구정연구단	구정에 대한 의견 수렴	15명(위촉직)	7~10만원	-	-	2
28	재정계획심의위원회	기획예산과	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자문	14명(당연직10)	7~10만원	2	2	3
29	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	기획예산과	재정적 책임성 투명성 확보	12명(당연직3)	7~10만원	2	2	2
30	주민참여예산위원회	기획예산과	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	18명(당연직2)	7~10만원	3	5	3
31	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	기획예산과	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예방 등 심사	12명(당연직3)	7~10만원	-	-	2
32	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	기획예산과	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관련 정책 수립	14명(당연직6)	7~10만원	-	-	-
33	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	기획예산과	지방보조금 사항 심의	12명(당연직3)	7만원	2	4	7
34	규제개혁위원회	기획예산과	행정규제개혁 추진	15명(당연직7)	7~10만원	-	-	-

35	업무평가위원회	기획예산과	정부업무 평가	11명(당연직4)		-	-	-
36	의정비심의위원회	기획예산과	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심의 결정	10명(위촉직)	7만원	-	-	2
37	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	기획예산과	출자출연기관 책임경영체제 확립	7명(당연직2)	7~10만원	1	1	1
38	물가대책위원회	일자리경제과	물가 및 공공요금 관리	6명(당연직3)	7~10만원	-	2	-
39	마포비즈니스센터운영위원회	일자리경제과	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항 심의	9명(당연직2)	10만원	7	5	10
40	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	일자리경제과	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상생 발전	9명(당연직2)	7만원	-	1	1
41	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	일자리경제과	기금운용 심의	6명(당연직2)	7만원	7	7	8
42	일자리창출위원회	일자리경제과	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자문 및 민관 공조체계 구축	11명(당연직3)	7만원	1	1	1
43	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	일자리경제과	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	4명(당연직4)	7~10만원	-	-	-
44	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	일자리경제과	공공근로사업 원활한 추진	8명(당연직5)	7만원	2	3	2
45	생활임금심의위원회	일자리경제과	생활임금 주요사항 심의	6명(당연직1)	7만원	1	1	1
46	계약심의위원회	재무과	추정가격 50억이상 공사의 입찰자격, 계약방법 등 심의	9명(당연직1)	7만원	2	4	2
47	공유재산심의회	재무과	공유재산이 관리 및 처분 자문	11명(당연직5)	7만원	8	7	5
48	세입공적심사위원회	징수과	세입증대 공무원 및 민간인 특별공적 심사	6명(당연직3)	7~10만원	4	4	4
49	지방세심의위원회	세무1과	지방세 이의신청 심의	20명(당연직4)	7만원	4	5	4
50	지역사회보장협의체	복지행정과	지역사회보장 관계기관 협력 강화	53명(당연직14)	7만원	20	16	13
51	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용위원회	복지행정과	기금 운용관리 심의	5명(당연직3)	7만원	5	2	6
52	의료급여심의위원회	생활보장과	의료급여사업 심의의결	5명(당연직4)	7만원	6	6	10
53	생활보장위원회	생활보장과	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심의의결	12명(당연직5)	7만원	12	13	12
54	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	어르신복지 장애인과	마포구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	9명(당연직4)	7만원	3	3	4
55	장애인복지위원회	어르신복지 장애인과	장애인복지 사업 심의	18명(당연직2)	7만원	1	1	2
56	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 위원회	어르신복지 장애인과	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 심의	8명(당연직1)	7만원	12	12	12
57	보육정책위원회	가정복지과	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등 심의	15명(당연직2)	7~10만원	4	3	4
58	양성평등위원회	가정복지과	양성평등정책 심의조정	10명(당연직2)	7~10만원	2	2	2
59	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	가정복지과	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사항 심의조정	8명(당연직4)	7~10만원	-	2	1
60	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	가정복지과	기금의 조성 및 운영사항 심의의결	7명(당연직2)	7만원	2	5	5

61	아동·여성안전지역연대	가정복지과	아동·여성보호 시책 추진	16명(당연직4)	7~10만원	1	1	1
62	아동급식위원회	가정복지과	아동 급식지원 전반사항 선정 및 결정	8명(당연직3)	7만원	2	1	-
63	아동복지심의위원회	가정복지과	요보호 아동의 보호관리 등 논의 및 심의	9명(당연직3)	7만원	-	2	-
64	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	가정복지과	지역아동센터 원활한 사업추진 및 활성화	7명(당연직3)	7만원	-	1	1
65	아동위원회의	가정복지과	지역내 아동의 가정환경 파악 및 지원	32명(위촉직)	7만원	4	4	4
66	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	가정복지과	드림스타트 사업 자문	7명(당연직3)	7~10만원	1	1	1
67	교육발전자문위원회	교육청소년과	교육발전 자문	15(당연직3)	7~10만원	-	-	-
68	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	교육청소년과	각급 학교의 보조사업 자문	9명(당연직3)	7~10만원	1	1	1
69	급식지원심의위원회	교육청소년과	우리구 급식지원사업 심의	11명(당연직5)	7~10만원	1	1	1
70	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	교육청소년과	학교폭력예방대책 추진	19명(당연직4)	7~10만원	-	-	-
71	청소년육성위원회	교육청소년과	청소년육성 주요시책 심의	9명(당연직2)	7~10만원	-	-	-
72	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	교육청소년과	위기청소년 지원연계 활성화	15명(당연직4)	7만원	1	1	2
73	평생교육협의회	교육청소년과	지역주민 평생교육 추진	12명(당연직3)	7~10만원	1	-	1
74	평생교육실무협의회	교육청소년과	평생교육 기관·시설간 협력 증진	16명(당연직2)	7~10만원	1	1	-
75	마포구립도서관 수탁자 선정 위원회	마포중앙 도서관	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	7명(위촉직)	7만원	2	0	2
76	마포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	마포중앙 도서관	도서관 자료 수집·보존 등 장서개발에 관한 심의	10명(당연직3)	5만원	-	-	2
77	하늘도서관 운영위원회	마포중앙 도서관	도서관 운영 기본 방침 등에 관한 사항 심의	5명(당연직1)	7만원	-	2	2
78	도시분쟁조정위원회	주택과	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분쟁 심사조정	10명(당연직3)	7~10만원	2	-	1
79	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	주택과	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의결	13명(당연직6)	5~7만원	2	2	1
80	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	주택과	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	8명(당연직4)	7만원	1	-	-
81	도시계획위원회	도시계획과	도시관리계획 자문·심의	25명(당연직3)	7~10만원	6	5	7
82	도시건축공동위원회	도시계획과	지구단위계획(안) 심의	25명(당연직3)	7~10만원	-	-	-
83	도시디자인위원회	도시경관과	마포구 도시경관 체계적 개선 및 관리	25명(당연직3)	7~10만원	-	-	-
84	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	도시경관과	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	11명(당연직3)	7~10만원	6	10	11
85	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	도시경관과	기금의 운용에 관한사항 심의	9명(당연직5)	7~10만원	3	3	3
86	건축위원회	건축과	건축법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조사·심의	59명(당연직2)	7만원	24	21	25
87	환경위원회	환경과	환경보전시책 수립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참여	14명(당연직4)	7~10만원	1	1	1



88	도시농업위원회	공원녹지과	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생태도시 조성	9명(당연직3)	7~10만원	-	-	-
89	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	공원녹지과	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심의	8명(당연직4)	10만원	1	-	1
90	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 위원회	교통행정과	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경감 심의	9명(당연직3)	7만원	1	1	1
91	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	교통행정과	교통안전에 관한사항 및 주요정책 결정	13명(당연직9)	7만원	2	-	-
92	버스노선조정위원회	교통행정과	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 한정면허 사무처리	9명(당연직5)	7만원	-	-	-
93	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위원회	교통행정과	사업추진 연구 및 자문	30명(당연직2)	7만원	-	-	3
94	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	교통지도과	교통민원 신고사항 처리	10명(당연직2)	7만원	12	12	12
95	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	교통지도과	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	9명(당연직4)	7만원	12	12	12
96	미분용지보상심의위원회	건설관리과	미분용지 보상방법 및 절차사항 규정	12명(당연직7)	7만원	1	-	2
97	도로관리심의회	토목과	도로굴착 심의, 지하시설물 안전대책, 도로점용 사업계획 및 안전대책	23명(당연직9)	7~10만원	2	2	2
98	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	토목과	기금운용계획 수립,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	8명(당연직6)	7~10만원	2	3	2
99	공유토지분할위원회	부동산정보과	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	9명(당연직5)	7만원	2	2	-
100	도로명주소위원회	부동산정보과	도로명주소 부여 변경 등	9명(당연직4)	7만원	2	-	-
101	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	부동산정보과	토지 및 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	15명(당연직6)	7만원	5	4	4
102	지적재조사위원회	부동산정보과	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	9명(당연직4)	7만원	-	-	-
103	경계결정위원회	부동산정보과	토지경계설정에 관한사항 심의의결	11명(당연직4)	7만원	-	-	-
104	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	보건행정과	지역보건의료시책 자문	12명(당연직6)	7~10만원	1	1	1
105	안전한마포구만들기운영 위원회	보건행정과	안정도시요건 사항 규정	12명(당연직7)	7~10만원	-	-	-
106	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	위생과	식품진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사항 심의	10명(당연직5)	7~10만원	3	3	3
107	건강생활실천협의회	지역보건과	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세부계획 수립시행	10명(당연직1)	7~10만원	1	1	1
108	정신건강심의위원회	의약과	정신건강에 관한사항 심의 및 자문	10명(당연직3)	7만원	-	-	-
109	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	의약과	자살예방 정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자문	11명(당연직4)	7만원	-	-	-
110	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사업 지역협의체	의약과	지역사회의 보건지원 확보 및 아동의 다양한 보건문제 협의	7명(당연직1)	7만원	3	3	3
					계	306	301	329

### 3. 관계법령

#### 지방자치법

#####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

-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# 지방자치법 시행령

##### 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  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-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# 제80조의2(자문기관의 구성)

-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80조의3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